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시 개정('20.9.10.~'20.10.4. 적용) 사항 안내

1. 관련

가.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-3515('20. 9. 10.)

나.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-3605('20. 9. 10.)

2. 위 호와 관련하여, **금년 추석 기간에 한해('20.9.10. ~ 10.4.)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·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'20. 9. 10.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[붙임]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3. 아울러, **[붙임]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※ 관련 자료 :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기 가능

※ 문의 사항 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(044-200-7704)

붙임 1.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1부.

2.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1부.

3.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.

4.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한시적 운영 방안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, 국립대병원, 소속기관, 소속단체

주무관 **최희철** 교육연구사 **정서진** 행정사무관 **출장** 반부패청렴담당관 2020.9.15.
당관 **엄진섭**

협조자

시행 반부패청렴담당관-6437 (2020. 9. 15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번호 044-203-6442 팩스번호 044-203- / nostier84@korea.kr / 대국민 공개